

제조물책임법이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 책임법이 산업안전분야에
중사하거나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임 현 교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교수

1. 서론

최근 들어 제조물책임법이니, PL이니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듣게 된다. 왜냐 하면 지난 1999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09호 로써 공포된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확정되어 발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더욱이 산업안전 분야에 중사하거나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업안전과 제조물책임이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야 다행이겠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이에 대비하여야 할 생산업체들과 안전분야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고 딱한 노릇이기에, 본 기고에서는 선진국들의 제조물책임의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이 법이 안전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제조물책임법

21 제조물책임이란 무엇인가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PL)이란, 넓은 뜻에서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가한 제조물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그 사용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 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 신체,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야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서, 기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고 되묻는 이가 많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법이 기존의 민법의 손해배상책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법의 제정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이다. 법의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

한계가 있고,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만큼 제조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제품 안전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를 도모하지는 취지이다.

22 제조물책임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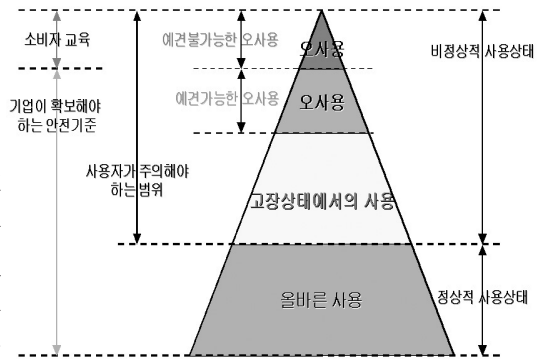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된 법 이론은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 무과실책임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 과실책임이란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조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과실을 저질렀다는 행위를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해석 취지로서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는 반대로 소비자가 제품에 위험요소, 즉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제조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크게 1) 설계상의 결함, 2)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3)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3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또,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3 제조물책임의 내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제조물이 1) 제조물의 외관, 2)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제조물의 사용, 3)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 한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해당기업의 기술수준이 아니라 관계분야의 기술수준이라는 점이며, 점차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세계적인 기술표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제조자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특 집

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은 기존의 제품이 예상해 온 제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법하에서의 기업책임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기존에는 사용자, 즉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른 사용방법에 의하여 제품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거나, 제품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은 완수되었다고 간주되었다. 이것은 통상적인 민사책임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사회 통념적으로 예견가능한 오용, 다시 말해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 오사용까지도 예방할 수 있어야 제조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부분이 기존의 신뢰성이나 품질경영의 개념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이다.

24 제조물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은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의미하므로 우선은 제조물을 직접적으로 제조한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의 책임주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제조물책임) 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임대업자·리스업자, 운송업자·창고업자, 수리업자·설치업자, 공급자 등도 포함되므로 산업전반에 종사하는 거의 모

3. 제조물책임 방어와 제조물책임 예방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응방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과, 일단 발명한 후에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활동 중 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물책임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 이라고 하고, 후자에 대응하는 것을 제조물 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se: PLD)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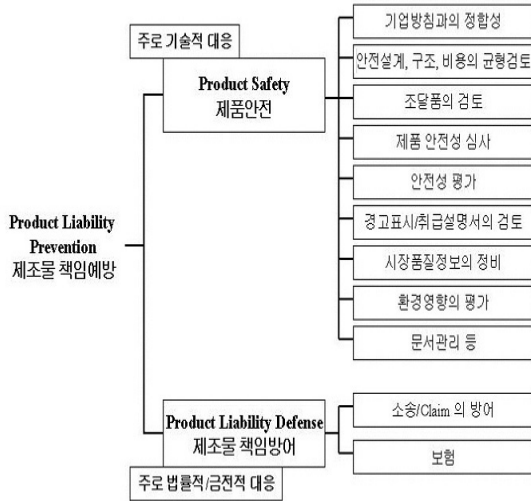
제조물책임 방어로는, 클레임(Claim)이나 리콜(Recall)에 대한 대비, 그리고 보험 등이 있다. 물론, 제품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리스크가 수용가능할 만큼 낮은 수준(Acceptable Low Level)이라면, 보험에 의해 책임을 전가할 준비를 하고, 필요한 관계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제조물책임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정과 화해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책임이 있든 없든 소송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이나 제품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기업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 발생 자체는 피해야 할 상황이며, 이와 같이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장담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이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방안

그러므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상황 자체가



리로 이루어진다. 이 때 시장품질정보란 단순한 제품의 기능적 품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갖는 안전성까지 포함하는 통합 신뢰감(Dependability)을 가리킨다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4. 제품안전과 제품안전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은 구상, 개발, 생산, 배치, 사용, 그리고 폐기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수정될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통상 제품의 수명주기(Life Cycle)이라고 하는데, 제품의 모든 수명주기를 통해 제품의 위험수준이 허용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명주기를 통하여 몇 차례 반복하여 제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품의 안전 제

약사항(Safety Constraints) 다시 말해 제품기능과 사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하에서 제품안전을 확보하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거,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품안전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이 프로그램도 다른 관리활동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생산체계에서의 관리활동이란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품안전프로그램도 조직구성과 안전관계자의 책임, 제품 개발과정에서의 중요한 안전업무활동, 분석이나 활동의 심도, 다른 생산부서 및 관리부서들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며, 한편으로는 연속적인 제품의 수명주기의 각 단계, 즉 구상, 정의, 개발, 생산, 운전 단계에서 제품안전에 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노력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5.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5.1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는 우선, 사고방지기술의 향상 및 사고재발 방지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고객만족도도 향상되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한편으로는, 보험에 의하여 기업의 책임을 분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을 연구·평가·개발함으로써 제품개발이 지연된다든지, 클레임·조정·소송처리비용 등 원가요소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보험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이 상승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가격상승의 여파는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니,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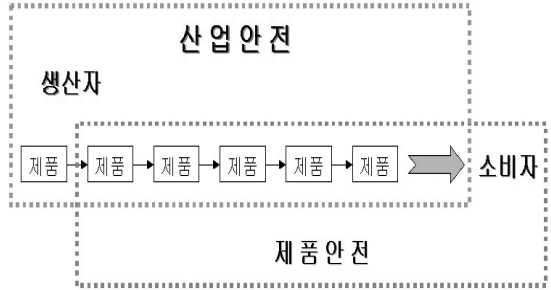
특 집

52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자칫 산업안전과 제품안전분야와는 별개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까지 생산현장 전반에서 축적되어 온 사고예방의 노우하우 (Know-How)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산업안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현장에서 기기나 재료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반면, 제품안전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은 생산현장의 근로자 모두가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생산기계나 도구, 혹은 가공중의 재료의 결함에 기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모두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해당국의 법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그비리크 크즈르케




구등의 결함은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산재로 인한 산업재해의 보상청구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도, 기계나 재료제조업자를 상대로 PL소송을 일으켜, 손해를 중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주(州)가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PL소송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분야에서도 PL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산업재해의 발생형태를 제품안전성 개선에 활용하는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해당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다음 생산단계의 제조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신속하게 피이드백 (Feedback)시켜 자사제품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기업간의 마찰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생산재의 경우에는 출하 후에도 많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성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간의 정보 공유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산업안전관리도 역시 정보화의 추세를 거스를 수 없으며, 어느 관리분야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평가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림 3> 제품안전과 산업안전의 관계

현대의 생산활동은 원재료로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생산하고 제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원재료를 관계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가공, 처리하거나,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한다. 이것은 생산하는 제품이 복잡하고 부품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대의 기업들은 1차 생산만을 전담하지 않은 이상,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두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모든 생산원료, 기기, 설비는 제조물에 해당되며, 모든 근로자는 제조물의 사용자에게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6. 결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문제인식과 과감한 개념의 전환, 그리고 희생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으로부터 산업안전분야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산재 제품의 안전성 향상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선행제품의 제품안전활동이 곧 후행작업의 산업안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품의 제조·사용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관리방식과는 시각적인 차이가 매우 현저하므로, 개념의 전환과 기술적인 보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제품안전조직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용자의 사고조사를 통한 현장정보의 피이드백도 중요하다. 또한, 제품결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대안의 검토를 통한 설계상의 결함예방, 품질 및 생산관리의 엄격화를 통한 제조상의 결함예방, 그리고 경고라벨, 표지, 사용설명서 등의 활용을 통한 표시상의 결함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따라서 시험, 검사, 인증 절차가 더 엄격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발생 가능한 상해·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기법, 사용자의 제품 오용모드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분석기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신뢰도 평가·품질보증이 아닌 안전성 평가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업종간에는 제품오용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의 사고 사례정보를 각 업종별로 Database화하고, 공동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한다면, 제품 안전성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국제수준에 맞게 조속히 체계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짧은 시간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산업안전분야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통해 사고예방의 노우하우를 간직하고 있는 산업안전